

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
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증평출장소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, 이와관련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가. 조례제명 변경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
⇒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·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

나. 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등 상위법 적용조항 추가
(안 제1조, 제4조, 제15조제1항)

다. 불부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비

- 하수처리장 ⇒ 하수·분뇨처리장
- 하수종말처리장 ⇒ 하수처리장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
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증평출장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
처리장과 연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
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분뇨처리장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(행정능률 향상,
비용절감 등)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.

붙 임 :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
중개정조례(안)